

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20일
신청 기관 · 단체	기관명		법인등록번호		
	소재지		(전화번호:)		
대표자	대표자		주민등록번호		
	주소		(전화번호:)		
검사대행 기구					
검사의 범위					

「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해양경찰청장 귀하

제출서류	1. 「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기술인력·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. 사업계획서(조직도, 기술인력 현황 및 안전검사 관련 업무의 수행 실적 등을 포함합니다) 3. 자체 안전검사업무 규정(기술인력의 관리 및 안전검사의 절차 등 안전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합니다)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	

